

I.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현황

1. 농촌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I. 농촌지도사업 관련법령(발취)

1. 농촌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가. 농촌진흥법

[시행 2010.1.25] [법률 제10939호, 2011.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농업과학기술[축산업, 가축 위생, 양잠업, 버섯의 육종(育種)·재배, 농산물·축산물의 저장·이용·가공 및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개량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 나. 농업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 다. 주요 우량작물, 채소 씨앗, 누에씨, 뽕나무 묘목, 화훼종묘(花卉種苗), 우량 과수(果樹)의 묘목, 유용 미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과 가축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
- 라.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
- 마. 농업경영의 적정규모화·능률화·협업화 및 농업과 관련된 법인 등 농업생산조직체의 경영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 바. 농촌생활 및 농촌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농촌지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 나.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 다. 농산물·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種畜)의 보급

- 라.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마.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 바.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豫察), 방제(防除)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사.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 향상을 위한 지도
 - 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防疫) 기술 지도
3. “교육훈련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나.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 산·학 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農科系)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훈련
 - 다.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 마.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1.7.25]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施策)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2항의 공공단체 외의 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개정 2011.7.25>

1. 연구·개발 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7.7.13>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25>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조(공동연구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이 영농(營農)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관계 대학,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과 그 밖에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 기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物)에 관한 연구·개발 및 농업유전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4. 선도기술(先導技術)의 개발
5.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지원시책등의 건의)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지원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시책 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연구·지도직공무원)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 업무 또는 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 업무 또는 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 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연구·지도공무원의 자격등) ①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연구·지도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讓與) 또는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농업산·학협동사업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에 따른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농촌진흥기관이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과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부칙 <제9957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화재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실용화재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도 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0939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3.26] [대통령령 제22096호, 201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09.8.25>

제2조(작물의 종류)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1.8>

1. 자생식물중 형질의 개량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
2.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

제3조 삭제 <2008.1.8>

제4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심의·조정에 앞서 동 업무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조정업무를 행한다.

제5조(공동연구대상사업)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기술의 개발
2. 수출지향전략작목의 개발
3. 첨단기초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4. 농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
6. 국내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7.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대상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농업인단체(이하 "공동연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 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7조(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농업과학기술개발계획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4.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소속 시험 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5.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본계획)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훈련기관) ①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8, 2009.8.25>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
3.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육훈련기관중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강사의 지원
5.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1조(명예직연구관의 자격) ①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재임중의 연구실적이 현저하고 재직시의 직위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한다. <개정 200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직명은 "명예직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위촉기간 및 수당등) ① 명예직연구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① 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중 담당연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복무) ①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연구관이었던 자는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명예직연구관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내역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기성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기성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직제·규약 또는 정관(학교·단체에 한한다)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지급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결정된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비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21조(보상금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특허청장과의 협의) 농촌진흥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법 제1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분석·평가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종묘의 증식 사업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3(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5(실용화재단에 출연 및 지원)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실용화재단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6(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부칙 <제22096호, 2010. 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1996.3.20] [농림부령 제1226호, 1996.3.2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대상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협약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교부신청) 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시설규모(생산능력을 기재할 것)
(2)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제7조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의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제9조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 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상황의 보고)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6호,1996.3.2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촌진흥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재지
2. 사업명
3. 사업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비예산액
6. 보조금교부신청액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촌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계약신청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기업체명		
⑤연구성과의 명칭			
사용범위	⑥사용기간		
	⑦사용지역		
	⑧사용내용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농촌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당해 연구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사용료 견적서 1부			
3.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사용료견적서

①연구성과의 명칭

②기술사용료 견적금액

③기술사용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년 월 일

주 소

기업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2007.12.21 법률 제875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부칙 <제875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7.18, 1979.8.27, 1994.5.16, 1995.9.28, 2007.6.11>

제1조의2 (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24, 2007.6.11>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본조신설 1995.9.28]

제2조 (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2.1, 1994.5.16, 1995.9.28, 2007.6.11, 2008.10.20>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 (도심의회의 구성) ① 도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9.8.27>

② 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와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6.11>

1. 도·도교육위원회 및 도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인 이내

③ 제2항제3호·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5.16, 1995.9.28, 2007.6.11>

제6조 (도심의회의 기능) 도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6.11]

제6조의2 (시·군심의회의의 구성) ① 시·군심의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군심의회의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6.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이내)
 -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산림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
-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9.28]

제6조의3 (시·군심의회의 기능) ① 시·군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6.11, 2008.6.20, 2009.10.8>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6.11>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군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의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1>[본조신설 1995.9.28]

제7조 (위원장등) ① 각급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의를 대표하며 심의회의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각급심의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1994.5.16>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人以下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5.16>

제10조 (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9.28>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79.8.27>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9.28>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1] [법률 제9347호, 2009. 1.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8.2.29, 2011.7.25>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개정 2011.7.25>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

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개정 2011.7.25>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개정 2011.7.25>

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개정 2011.7.25>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

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개정 2011.7.25>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 (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7조 (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칙<개정 2011.7.25>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9347호,2009.1.3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 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 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

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

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2012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2012년 1월 일 인쇄

2012년 1월 일 발행

발행인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감수인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편집인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지방농촌지도관 윤종철

지방농촌지도사 이준배

발행처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부

전화 (031) 229-5842

인쇄처
